

1. 개정이유

「선원법」 제116조 개정에 따라 선원 등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위원 자격규정 개선 (안 제45조의2 제5항)

- 1) 여객선 항로의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규정 개정

나. 노동권 및 인권 교육의 내용·시기 및 절차 (안 제57조제1항 및 별표 5의 5)

- 1)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 매년 2시간(최초 3시간)의 노동권 및 인권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

다. 서식 개정 등 기타 (안 제56조 및 제15호 서식, 제15호의2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제17호의4 서식,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4호 서식, 제25호 서식)

- 1) 제56조의 ‘연소선원’ 오타자를 ‘소년선원’으로 수정
- 2)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신규발급신청서와 일원화
- 3) 선원수첩, 고속구조정조종사 자격증,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별지2, 3, 4, 5, 6, 7은 서식 변경으로 별첨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6조의 제목 “(연소선원의 사용승인)”을 “(소년선원의 사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소선원”을 “소년선원”으로, “해당선원”을 “해당 선원”으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를 “기록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영 제43조제2항”을 “법 제116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2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5의5를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6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17호서식을 별지3와 같이 한다.

제17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제20호서식을 별지4과 같이 한다.

제20호의2서식을 별지5와 같이 한다.

제24호서식을 별지6와 같이 한다.

제25호서식을 별지7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u>실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u> 5명 이상으로 적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u>실시하여야</u>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실시해야</u> ----- --. ----- ----- <u>사람으로서</u> -- ----- ----- <u>실시해야</u>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u>여객선 운항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제56조(<u>연소선원의 사용승인</u>) 선박소유자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u>연소선원의 사용승인</u>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원의 승선공인신청서에 <u>해당선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색 글씨로 기재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u> 한다.	제56조(<u>소년선원의 사용승인</u>) -- ----- --- <u>소년선원</u> ----- ----- ----- <u>해당 선원</u> ----- ----- ---- <u>기록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u> -----.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u>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u>	제57조(선원의 교육훈련) ① <u>법 제116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2</u>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③ 삭제 ④ (생략)	<u>항</u>-----<u>다른</u>----- -----. ④ (현행과 같음)
---	---

[별지 1]

■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57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유효기간
기초안전교육	1.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 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선박직원, 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4.5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다)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원양어선의 갑판장 또는 조기장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친숙훈련, 개인의 안전 및 사회적 책임, 개인의 생존기술, 방화 및 소화, 기초응급처치, 해난방지에 관한 사항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상급안전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1.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조정이 탑재되어 있는 선박(어선을 제외한다)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운항장·운항사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여객선의 선박직원 또는 구명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구명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5년

	상급 소화 교육	여객선 선박직원 및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상급소화에 관한 교육내용	3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응급 처치 담당 자 교육	1. 5급항해사, 5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의 해기사면허 소지자로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의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2. 응급처치담당자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응급처치담당자에 관한 교육내용	3일(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5년
	고속 구조 정 조종 사 교육	구명정 조종사 교육 이수자로서 고속구조정이 탑재된 선박에서 고속구조정 조종사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고속구조정 조종사에 관한 교육내용	1일	5년
여객선 교육	여객선 기초 교육	여객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선박의 안전 또는 오염방지 임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비상배치표상 비상시 여객보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비고란 제10호에 따른 선상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친숙훈련, 여객선 안전훈련 및 군중관리)	2일(재교육의 경우에는 1일)	5년
	여객선 상급 교육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여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무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의 교육내용(여객선의 특성, 군중관리, 여객과 화물의 안전, 선박의 복원성, 위기관리 및 인간행동의 특수성)	4일(재교육의 경우에는 2일)	5년
	당직부원	2월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	항해당직 요령 및 정박	5일	없음

교 육	에 승무한 자로서 항해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초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당직 요령		
	3년 이상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동화선박의 운항당직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및 운항당직 요령	1월 이상	없음
유능부원 교육	1.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갑판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2.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6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기관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유능부원에 관한 교육내용(당직일반, 화물취급, 해양오염방지, 기보수 등)	5일	없음
	운항당직부원으로 12개월 이상 승무한 사람으로서 운항유능부원이 되려는 사람		15일 이상	없음
탱커기초 교육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3일	없음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액화가스탱커의 화물특성·독성·위험·인명보호 및 오염방지 등	3일	없음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 갑판부·기관부의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장, 운항사로 승무하기 위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에 관한 교육내용(위험방지, 비상대응 등)	2일	없음

		에 따른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으로서,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선박조리사교육	영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박조리사가 되려는 사람	○ 집단급식 및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그 밖에 선박조리사의 자질 향상 및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일 그 밖의 사람: 3일	없음
의료관리자교육	자격취득교육	의료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	5일	없음
	보수교육	의료관리자자격증 취득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의료관리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	선원당직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료관리자 교육내용	2일	5년

고속선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		1. 탈출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2. 여객의 소집 및 유도, 구명동의 착용의 지원, 기타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3.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일	없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장 및 갑판부 직원		1. 선박의 특성 및 항행상의 조건에 따른 조선편법에 관한 사항 2. 조타시설, 기타 선박의 항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기관을 제외한다)의 조작에 관한 사항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2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고속선에 승무하고자 하는 기관부 직원		기관의 조작에 관한 사항	1일 (재교육의 경우에는 0.5일)	2년
선박 보안 교육	선박 보안 상급 교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박보안책임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등급,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점검 및 평가, 선박보안위협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일	없음
	선박 보안 중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를 보조하려는 사람	선박보안계획, 선박보안 점검, 선박보안장비 및 시설, 선박보안 위협 및	1일	없음

	교육		대응에 관한 사항		
	선박 보안 기초 교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 하려는 사람	선박보안장비, 선박보안 위험 및 대응에 관한 사 항	0.5일	없음
선원 노동 권 인 권 보 호 교육	기본 과정	「선원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심화과정 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선내 노동권·인권 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 례와 대응 방안에 관 한 사항	0.375일 (재교육 의 경우 에는 0.25일)	1년
	심화 과정	「선원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선원 중 선장, 기관장, 1 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승선 중 또는 승선 예정인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 사업 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 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	선내 노동권·인권 에 관한 이해 및 침해 사 례 연구, 사고 방지대 책 및 예방방안에 관 한 사항	0.375일 (재교육 의 경우 에는 0.25일)	1년
	외국 인 기본 과정	기본과정 대상자 중 「국적 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의 국민이 아닌 사람	국적선의 문화에 대한 이해, 선내 노동권·인 권에 관한 기본 인식 및 침해 사례, 의사소 통 능력에 관한 사항	0.375일 (재교육 의 경우 에는 0.25일)	1년
	외국 인 심화 과정	심화과정 대상자 중 「국적 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의 국민이 아닌 사람	국적선의 문화에 대한 이해, 선내 노동권·인 권에 관한 기본 인식 및 침해 사례, 의사소 통 능력에 관한 사항, 사고 방지대책 및 예 방방안에 관한 사항	0.375일 (재교육 의 경우 에는 0.25일)	1년
비 고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나. 1997년 12월 15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부원은 기 초안전교육의 교육기간을 3일로 할 수 있다.					

다. 상급안전교육과정 중 구명정 조종사 교육·상급소화교육 및 응급처치담당자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재교육의 경우는 2일)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5.1.6.>

4. 1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및 조기장을 제외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한다.

5. 기초안전재교육대상자가 상급안전재교육을 받는 경우 기초안전교육의 재교육을 면제한다.

6. 유사한 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복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7. 삭제 <2012.5.18>

8.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의 부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제외한다)이 여객선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 및 어선의 선박직원(원양어선의 갑판장, 조기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초안전교육기간은 2일로 한다.

9. 고속선이라 함은 최대속력이 $3.7 \times \nabla^{0.1667}$ 이상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 는 계획 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용적(m^3)을 말한다.

10. 기초안전교육, 선박보안기초교육 및 여객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선상훈련 내용 및 실시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선상훈련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른 친숙훈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선상훈련은 선박승선 시부터 1주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상훈련은 선장 또는 상급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선박직원 등이 시켜야 한다.

11. 삭제 <2012.5.18>

12. 탱커기초교육 중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와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을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기간을 5일로 할 수 있다.

13. 선원노동권인권보호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시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이러닝콘텐츠의 운영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 승선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첨